

데이터베이스 하자(흠)와 제조물 책임 문제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원

데이터베이스 '흠'의 발생 문제

우리 사회가 고도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발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하여 기업 경영이나 의사 결정 등에 활용하여야 각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당한 액수의 정보제공료를 받으면서 기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와 제공자간에 그 하자에 대한 새로운 분쟁 등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간단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여러 사람들이 긴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내용의 부실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된다. 예컨대 특정의 '세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 계산 결과 면세에 해당되어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중에 세금 체납으로 가산금을 물게 되었을 경우 그 책임 문제가 따른다.

또한 증권 전산망에서 보내 주는 증권 정보가 구체적으로 주식의 가격, 등락폭 등이 형편없이 현저하게 그릇 처리되어 엉터리 정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였을 때의 책임 문제도 있다. '예측 정보' 일 경우는 문제가 다르지만 사실상으로 실제 집계되고

있는 통계 정보까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태만히 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흠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따른다. 데이터베이스의 하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① 데이터 분류가 잘못 되었을 경우 ② 시소러스 또는 키워드의 선택이 적절치 못한 경우 ③ 수집된 데이터의 내용이 수시로 보완되지 아니하여 부정확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그밖에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민법상 손해 배상의 책임 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그 저작자(구축 책임자)가 데이터의 분류, 키워드의 작성 및 시소러스의 선택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고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인데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별된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민법상 손해 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상당한 액수의 정보 사용료를 받을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하자에 대한 책임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상의 배상 문제

우리 나라는 아직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본, 미국, EC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약자인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 4월 12일에 그 안이 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이래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그 해 7월 1일에 공포되었으며 부칙 1항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제품의 사용자(소비자)는 대량생산·판매되는 공업 제품을 일상생활을 통하여 소비·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안전성은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식이 향상되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어 입법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판례의 전개에 의하여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엄격 책임이 일찍부터 일반화되어 왔으며 유럽에서는 EC지령을 계기로 EC각국뿐 아니라 EFTA를 포함한 17개국이 결함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입법하게 되었고, 이 움직임은 헝가리 등 구 사회주의 국가와 필리핀, 호주, 중국 등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OECD가입과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곧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게 될 제조물책임의 책임 근거 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의 특징으로서 ‘결함’을 책임 요건으로 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제조업자 등이 스스로 제조, 가공, 수입 등에 의하여 인도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

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말한다. 종래에 민법상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였고, 주로 재산 문제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은 재산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신체의 위해’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 등이 과연 자동차, 냉장고 등과 같이 제조물에 해당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의 입법례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한 동산(動産)을 말한다’라고 규정(일본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항)하였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의 특성, 그 통상 예견되는 사용 형태,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일본법 제2조 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동산(動産)이라 함은 부동산(不動産)이외의 모든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라고 규정하였다. 데이터·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하나의 재화로서 가치 있는 것에 틀림없고, 일반 제조물과 같이 제작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의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조) 물론 데이터, 프로그램, 기타 정보들의 결함으로 인한 위해의 발생이 자동차·전자제품 등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직접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비행기·기차·전동차 특히 고속 전철에 운행하는 고속 열차에 부착되는 프로그램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준다. 한편, 컴퓨터 기

기(PC 등)가 제조물임에는 틀림없다. 컴퓨터의 '결함'은 거의가 소프트웨어에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컴퓨터의 결함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면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물 책임 강조의 취지

현대 첨단 과학 시대,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는 제조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물의 제조업자는 소비자·이용자와 비교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제품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또한 그 결함의 발생을 일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소비자·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결함을 작출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경우는 더하다. 이러한 제조물은 제작한 전문가만이 결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일반 사용자는 전혀 문외한에 속한다. 고도의 전문가인 프로그래머만이 결함에 대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다.

둘째, 제조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이들의 사업 활동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 즉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서 배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평하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상당한 대가를 받고 정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과는 다르게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사업자가 자기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①최신의 정보 제공 ②가장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진실된 정보 ③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의 제공 등으로 선전하게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도 보안 프로그램의 장착으로 해커, 바이러스 침투에 완벽하다든지 장애발생시에 자동 제어 장치가 있다든지 등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선전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선전을 신뢰하고 사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제작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맺음말

앞에서도 제조물의 개념 정의에서 밝힌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컴퓨터가 제조물인 것은 틀림없다. 컴퓨터의 결함은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에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컴퓨터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컴퓨터의 결함은 당연히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의 개념에 포함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는 자기가 제작한 제조물에 대하여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책무는 법적으로 성실 의무에 해당되는 한편, 정보화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보 윤리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가치가 물질과 에너지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